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 1. 규칙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8. 25.
- 회부일자 : 2025. 9. 4.
- 상정일자 : 2025. 9. 4.

###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확립하고 평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 (변경)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2조)

- 심사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안 제4조)
-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안 제5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안 제6조)
- 심사기준 세분화 및 회의 기준 등 보강(안 제8조 ~ 제9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안 제11조)
-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안 제12조)
- 예산 편성·집행 조항 신설(안 제13조)
- 징계현황의 공개 등(안 제15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나. 입법의 취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다. 규칙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적용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주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안건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및 제6조(지역주민 의견수렴)에서 심사위원회 의결 전, 출국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여 사전 절차를 강화함.
- 안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등)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심사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 안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안 제13조(예산 편성·집행)에서 출장경비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안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에서 부적정 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경각심을 고취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평창군의 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전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1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의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붙임2 참고사항

### □ 행정안전부 개정규칙 표준안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정)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5.1월 개정)을 안내해 드리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의회에서는 시·군·구의회에 문서 전파 및 관련 부서 공유

붙임 (개정)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주무관	김계정	행정사무관	김민영	선거의회자치법	진급	2025. 1. 14.
합조자				규과	과장	이준식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243	(2025. 1. 14.)	접수	의정관-646		(2025. 1. 14.)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물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6-3376	팩스번호	044-204-8964	/	kjung81@mail.go.kr	/ 대국민 공개